

□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시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 6. 1. ~ 2014. 5. 31.인 경우 구 지방세법 적용
  - 2014년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 * 1% 200만원 + (2억원초과금액 * 2%)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과세표준 확정신고 · 납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 세액 공제 · 감면

종전<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의 10%(지특법 §167)

## □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종전<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1개월</li> <li>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li> <li>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li> </ul>

※ 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은 종전과 동일 : 법인세 신고 + 1개월(지령 §100조의27)

※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60⑦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을 하여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 되지 않음에 유의

### <Check>

법인세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자동연장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경우 기한연장 신청 제도가 없음에 유의할 것

## □ 신고특례

종전<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li> <li>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구 지방세법 §91⑤ - 해당 조항 삭제)</li> <li>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li> </ul>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 □ 제출서류

종전<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li> <li>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li> <li>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li> <li>③ 재무상태표</li> <li>④ 포괄손익계산서</li> <li>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li> <li>⑥ 세무조정계산서</li> <li>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li> </ul>

## □ 가산세

- 지방세관계법 확인후 계산

## □ 전자신고 ·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납부
- 신고·납부 방법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선택

구 분	신고·납부방법
간편 신고	일반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활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활용
파일 첨부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납부 시 활용 (대상 : 일반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첨부 신고 가능 법인(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방문신고